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268호, 2016. 3. 28.시행)으로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세관관서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행정에 특화된 빅데이터, AI 신기술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관세행정과 안전한 관세국경관리 실현을 위하여 관세청 차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2020.6.15.)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여행객 휴대품 통관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검사관실 2개를 1개로 통합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 1명을 둔다.

②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집·관리
3.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지원

제11조제3항 중 “인천항휴대품검사관 2명을”을 “인천항휴대품검사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단서 중 “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협업검사센터장·공항통관지원과장·공항수입1과장·특송통관1과장·인천항수입1과장·자유무역협정총괄과장·공항휴대품1과장·공항휴대품2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인천항휴대품과장·심사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조사정보과장·외환조사과장·마약조사과장·화물검사와

장”을 “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공항통관지원과장·공항수입1과장·특송통관1과장·인천항수입1과장·자유무역협정총괄과장·공항휴대품1과장·공항휴대품2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인천항휴대품과장·심사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조사정보과장·외환조사과장·마약조사과장·화물검사과장”으로, “해양수산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단서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4의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5”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1”로 한다.

별표 8 총계 “4,750”을 “4,74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693”을 각각 “4,691”로 하며, 관세주사보 “879”를 “878”로 하고, 관세서기 “1,018”을 “1,017”로 하며, 위생서기보 “25”를 “23”으로 하고, 조리서기보 “7”을 “9”로 한다.

별표 8의2 총계 “4,756”을 “4,754”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699”를 각각 “4,697”로 하며, 관세주사보 “885”를 “884”로 하고, 관세서기 “966”을 “965”로 하며, 위생서기보 “25”를 “23”으로 하고, 조리서기보 “7”을 “9”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조직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6(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 1명을 둔다. ②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집·관리 3.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지원		
제11조(세관) ①·② (생략)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통관감시국에 인천항통관지원1		제11조(세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과 · 인천항통관지원2과 · 인천
항수출과 · 인천항수입1과 · 인
천항수입2과 · 인천항수입3과 ·
자유무역협정총괄과 · 자유무역
협정1과 · 자유무역협정2과 · 자
유무역협정3과 · 감시총괄과 ·
화물검사와 및 인천항감시과를,
공항통관감시국에 공항통관지
원과 · 공항수출과 · 공항수입1
과 · 공항수입2과 · 공항감시과
· 공항감시관 · 장비과 및 전산
정보관리과를, 휴대품통관1국에
공항휴대품1과 · 여행자정보분
석과 · 공항휴대품검사관 9명 ·
인천항휴대품과 및 인천항휴대
품검사관 2명을, 휴대품통관2국
에 공항휴대품2과 및 공항휴대
품검사관 7명을,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과 · 특송통관2과 · 특
송통관3과 · 특송통관4과를, 심
사국에 심사총괄과 · 심사관 3
명 · 심사정보1과 · 심사정보2과
·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
에 조사총괄과 · 조사관 6명 ·
조사정보과 · 외환조사과 및 마
약조사과를 둔다.

----- 인천항휴대
품검사관을-----

⑫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검사관·센터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인천항통관지원1과장·감시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협업검사센터장·공항통관지원과장·공항수입1과장·특송통관1과장·인천항수입1과장·자유무역협정총괄과장·공항휴대품1과장·공항휴대품2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인천항휴대품과장·심사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조사정보과장·외환조사과장·마약조사과장·화물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비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illegible]

조사과장 · 감시총괄과장 및 화물검사과장, 대구세관 · 광주세관 · 평택세관 및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과장은 행정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시정보과장 및 감시장비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⑭ (생략)

----- 서기관 · 기술서
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
검사센터장은 서기관 · 행정사
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⑭ (현행과 같음)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4</u>	<u>5</u>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u>2</u>	<u>1</u>	-1
행정사무관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4,750</u>	<u>4,748</u>	-2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4,693</u>	<u>4,691</u>	-2
일반직 계	<u>4,693</u>	<u>4,691</u>	-2
·	·	·	
·	·	·	
관세주사보	<u>879</u>	<u>878</u>	-1
·	·	·	
·	·	·	
관세서기	<u>1,018</u>	<u>1,017</u>	-1
·	·	·	
·	·	·	
위생서기보	<u>25</u>	<u>23</u>	-2
조리서기보	<u>7</u>	<u>9</u>	+2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4,756</u>	<u>4,754</u>	-2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4,699</u>	<u>4,697</u>	-2
일반직 계	<u>4,699</u>	<u>4,697</u>	-2
·	·	·	
·	·	·	
관세주사보	<u>885</u>	<u>884</u>	-1
·	·	·	
·	·	·	
관세서기	<u>966</u>	<u>965</u>	-1
·	·	·	
·	·	·	
위생서기보	<u>25</u>	<u>23</u>	-2
조리서기보	<u>7</u>	<u>9</u>	+2
·	·	·	
·	·	·	